

법률상식

성전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 정정 가능

— 김 진(경우회 재정 관리처장)

성전환자의 성(性)의 법률적 평가에 대해 대법원은 성전환수술로 반대 성으로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전문의의 정신과적 검사결과 반대 성으로서의 성격정체감이 확고한 진단결과와 법률상 혼인한 경력이 없고 자녀가 없는 상태, 생식기능이 존재하지 않을 때 호적상 성별기재의 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결정요지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역색채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 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성전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역색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 성역색채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 후의 성정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인된 성체로서의 인식이 이루어져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은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前職 경찰총수, 작통권 환수반대 성명서 발표



정상천 제 26대 치안국장을 비롯한 전직 경찰 총수 26명은 최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미동맹 파괴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전직 경찰총수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자해적인 논의를 즉각 중단 해야 하며, 오늘의 시점에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김정일이 대

남적화 통일을 위해 설치한 탓에 스스로 걸러주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간첩들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가의 대간첩 기능을 강화하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있었던 국군병사들에 대한 반미 시위대의 구타행위와, 진압경찰관에 대한 폭력시위대의 공격행위 등 최근의 일련의 공권력 무력화 기도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국법질서 유

지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직 총수들은 『속태우며 침묵하고 계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자유·민주·번영의 터전은 오직 「대한민국」 하나 뿐임을 새삼 상기하면서 우리의 겸허한 총정에 흔쾌히 동참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한 마음으로 뭉쳐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外事경찰 새롭게 도약

- 국제화 시대 걸맞는 海外 치안서비스 향상 -

25개국, 42개 공관에 주재관 51명 파견

국제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 급증 등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적 경찰업무의 증가로 외사 경찰의 역할이 점점 더 비중을 더해 가고 있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지난 3월 경무관 직급인 외사관리관실을 치안감이 관리하는 외사국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인력도 추가로 충원했다.

또한 서울·부산·경기경찰청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인천경찰청 외사계(인천 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연간 입출국 인원이 각각 2천 200만명 및 60만명, 체류 외국인인 매년 3만 7천여명)를 외사과로 확대 개편했고, 내년에는 경남경찰청을 비롯해 향후 순차적으로 제주경찰청 등 각 지방청별로 외사기구의 확대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사경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주재관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우리 경찰은 총 25개국, 42개 공관에 걸쳐 51명(경무관 3명, 총경 22명, 경정이하 26명)의 경찰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로 정부도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험과 해당국 경찰과의 협조가 용이한 경찰 주재관의 추가 파견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한국인 출국자가 78.9% 증가(99년 465만명에서 04년 832만명)하고 살인 및 납치 등 주요 사건사고 발생은 528% 증가(00년 434건에서 04년 2729건)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 주재관 업무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동남아 쓰나미 참사 발생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어 있던 경찰 주재관이 주재국 경찰과 함께 현장감중에 직접 참여하여 사체 신원확인 작업에 맹활약을 함으로써 유가족과 교민은 물론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외공관장은 물론 현지 교민들의 경찰 주재관 파견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도 경찰 주재관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는 추세로, 현재 미국은 126명을, 일본은 149명을, 불란서는 92명의 경찰 주재관을 파견하고

수사구조개혁 앞장섰던 황운하 대전서부서장 또 다시 전보 조치

- 6개월만의 인사조치에 비판과 신중론 엇갈려 -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의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해 온 황운하 대전서부경찰서장이 부임 6개월여만인 지난 9월 25일 경찰 종합학교로 전격 전보조치된 것을 두고 「수사권 조정의 사망한 날, 「근조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흘러 나오는 것을 비롯, 경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로 경찰청 내부계시관과 대전서부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황 총경의 전보조치에 항의하는 문구들을 비롯해 황 총경을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잇따라 오르는 등 격양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충남경찰청의 한 간부는 이번 인사조치와 관련 『상부에서는 검찰과 대화를 통한 협의를 통해 수사권이 조정될 때까지는 검·경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기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최근 법원과 검찰 등 법조 3권이 같고 있는 형국에 경찰마저 끼여들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 지 우려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그러나 수사권 조정은 경찰 직원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사안인데,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 황 총경을 비수사 분야로 급작스레 전보조치 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탄력 받을지 관심 집중

대전 서부경찰서 한 직원도 『수사권 조정을 진두지휘했던 황 서장이 검찰과 마찰을 빚자 이에 부담을 느낀 수뇌부가 수사와는 상관없는 보직으로 인사조치했다』며 『잡잡해지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흥분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긴 안목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바라보자는 「신중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관들은 경찰내부 계시관에 『이번 조치를 「유배인사」로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수뇌부의 장기적인 전략을 차분히 지켜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의 한 간부는 『피의자 인치를 둘러싼 갈등은 황운하 총경의 개인적

인 신념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며 『경찰 간부라면 개인만을 생각해서는 안되는데 지속적으로 개인 의견을 표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최근 황운하 총경이 피의자 인치를 놓고 검찰과 맞은 갈등은 황 총경이 과거 수사구조개혁팀장을 맡으면서 느꼈던 충성에서 비롯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맞박고 『국가 전체의 틀 안에서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한 뒤 제도의 운용, 조직운영 부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문제가 국민에게 검·경 양 기관의 갈등으로만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 대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포석의 일환으로 지도부가 선택한 수순일 수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근무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인데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일선 서가 아니더라도 많은 보직이 있는데 서장으로 발령낸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잘못된 인사를 시정조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황운하 서장은 이명사를 통해 『경찰조직을 일선상의 영달과 출세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분열하면 패자를 부를 사람이 있기에 내부를 향한 투쟁을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배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이면 어디 가 있든지 당연히 그래야 하듯 나도 할 일이 있으면 하고 할 말이 있으면 하겠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을 지낸 황운하 총경은 최근 이윤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판에 동조하며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경찰측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경찰 내부 계시관에 올리는 한편 구속 전 피의자를 검찰청사에 인치하라는 대전지검의 요구를 이달들어 2번 씩이나 거부하는 등 검찰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

이번 인사조치로 그간 잠잠했던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될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

개구리 소년 사망은 타살 아닌 저체온死

- 被告로 소송에 보조 참가한 김영규 前 대구시경 강력과장, 변론 준비 서면 통해 강력 주장 -

지난 91년 3월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당시 수사 본부 소속 전담관으로 근무했고, 퇴직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자정해 국가(피고)를 도와 보조 참가인으로 활동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규 회원(前 총경, 대구시경 강력과장)이 최근 「개구리 소년 사건은 타살이 아니라 저체온사」라는 주장이 담긴 5차 변론 준비 서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제출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은 5명의 어린이들이 대구 외룡산에서 실종된 지난 91년 3월 26일 이후 11년 6개월만인 지난 02년 9월 26일 실종 어린이들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타살과 저체온사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중, 당시 감정을 맡았던 00대학 법의학팀이 이 사건을 타살로 발표하자, 유가족들은 이 사건을 타살로

결론짓고, 경찰의 수사 미숙 및 저체온사 발표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25일로 15년 공소시효 만료 됨)

한편 김 회원은 이번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어린이들이 저체온사로 사망했다는 것과 경찰의 유골발굴 과정중 현장보존 및 감식이 적정했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 회원은 『원고측(유가족)이 「피고(경찰)가 이 사건의 변사체 5구가 발견된 지난 2002년 9월 26일 이후 현장보존 및 감식절차가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여 행어나 남아 있을지도 모를 범죄의 증거물을 훼손하였고, 합부로 저체온사라고 발표하는 등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현장보존과 감식절차는 모두 적법타당 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회원은 『유가족들이 00대학 법의학팀의 신뢰할 수 없는 타살감정에 근거를 두고 소년들이 피살되었다고 확신하고 경찰의 미흡한 수사절차로 인해 1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범인을 체포하지 못함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데, 타살감정을 발표한 00대학 법의학팀이 사건발생 11년 6개월이 지난 백골에서 무엇을 근거로 타살로 결론지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회원은 『이번 사건을 타살로 감정한 00대학 법의학팀과 사건수사에 최선을 다한 경찰을 질타하며 이 소송에 이르게까지 한 유가족들은 온 국민과 경찰에 정중히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1월 9일 있을 예정이다.

불법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최근 일련의 폭력시위 양태가 경찰관을 향해 사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뾰족한 죽봉으로 눈을 찌르고, 물을 끓여붓는 등 전쟁을 방불케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국가공권력이 힘없이 무너지고, 선배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중앙일간지에 「불법 폭력시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지난 8월 19일과 20일 서울역사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바 있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명부에 기입(본인은 물론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 바람)후 절취하여 경우 회로 우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성명	주소	서명
1			
2			
3			
4			
5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신당동 171번지 대한민국재향우회, 우 100-821